##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**562**  제출연월일 : 2009. 11. 02. 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# 1. 제안이유

현재 시범으로 운영중인 무료관람을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완전 무료화하고, 세미나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서 비스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유료화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나. 세미나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:

(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9. 7. 17. ~ 8. 7. / 접수의견 없음

##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제3항중 "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"을 "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관람 및 매표시간)"을 "(관람시간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조(관람료)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세미나실 사용허가) ①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세미나실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, 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미나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- 1. 전통문화의 보존・보급・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
- 2.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,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
- 3. 그 밖에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

제6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중 "관람자"를 "관람자(제5조제1항에 따라 세미나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제1조(목적) <u>「박물관 및 미술관</u>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
제2조(개관 및 휴관) ① ~ ② (생략) ③ <u>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</u> 휴관 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박물관 게시 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2조(개관 및 휴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</u>
제3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(생략)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.	제3조 <u>(관람시간)</u> ①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
제4조(관람료)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야외전시장의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4조(관람료)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	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세미나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 1. 전통문화의 보존·보급·전승에 기여할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2.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,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 3. 그 밖에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

#### 햀 혂

개 정 아

- 7.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
- 8. 박물관자료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
- 9.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 칙」에 의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 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- ③대전광역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관람권) ①관람권은 일반권과 단체권으 로 구분한다.

②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 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관람의 제한) (생략)

- 1. (생략)
- 2. 정신이상자
- 3.~ 5. (생략)

제8조(행위의 제한) ①관람자는 박물관내의 제8조(행위의 제한) ①관람자(제5조제1항에 따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#### [별표]

박물관 관람료(제4조 관련)

		금액		
대상자	기준	개인	단체 (20인 이상)	비고
어른	1회	500	400	• 25세 ~64세
청소년 및 군인	1회	300	200	·13세~24세 및
어린이	1회	200	100	하사 이하 군인 ·7세~12세(초등학교 학생포함)

<삭제>

제7조(관람의 제한)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~ 5. (현행과 같음)

라 세미나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# 관계법령

# □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

제25조(관람료및이용료) ①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, 기타,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.

②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의 관람료,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□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

제16조 (대관 및 편의시설)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